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일교 등 불법 금품수수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 송언석·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39호)
 -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551호)
 -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47호)

2026.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송언석·천하람의원안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3
II. 서왕진의원안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5
3. 주요내용	7
III. 김병기의원안	9
1. 제안경위	9
2. 제안이유	9
3. 주요내용	10
IV. 검토의견	13
1. 제정안의 취지	13
2.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14

3. 제정안의 주요내용	15
4. 조문별 검토	22
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22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안 제3조~제5조) ...	31
다. 특별검사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안 제6조~제8조)	41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안 제9조~제12조)	53
마.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안 제13조~제17조)	62
바. 재판권,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안 제18조~제24조, 부칙)	67
 ※ 참고자료	 79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79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80

I. 송언석·천하람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언석·천하람의원 등 1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2.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향응·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약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요구·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지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감찰·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사건 왜곡·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정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지시·권유·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관리·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가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주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정책·수사·감찰·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규명이 요구됨.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신속·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무마·지연 또는 왜곡·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
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

- 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 지연 및 왜곡·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
- 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
- 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경비, 사퇴·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Ⅱ. 서왕진의원안

1. 제안이유

1. 발 의 자 : 서왕진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3.
3. 회부연월일 : 2025. 12. 24.

2. 제안이유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 및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중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의혹은 개별 정치인의 일탈을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구조적 정교유착 문제로서 민주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임.

최근 국회 다수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전환함에 따라, 본 사안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상규명의 문제로 귀결되었음. 이제 남은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 설정과 임명 절차의 공정성·중립성 확보임.

그간 제기된 통일교 관련 의혹은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의 공천·경선 등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단순한 금품 수수 여부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종교조직이 정치 과정 전반에 개입한 헌법 위반적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대상자가 속한 정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은 불가피함. 이에 본 법률안은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을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서 배제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른바 ‘셀프 수사’나 ‘방패 특검’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또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뿐만 아니라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까지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형식적 탈당을 통한 우회적 정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음.

이 법률안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방식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단절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통일교 관계자들이 정치인 또는 공직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을 제공·약속·공여한 행위와, 정치인 또는 공직자가 이를 수수·요구·약속한 행위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 또는 공직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범죄사건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여,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본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다.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등 관련 범죄행위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여 수사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 라.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마.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임명 구조를 제도화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및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4호)

사.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19조)

아. 파견 검사·공무원 수와 수사 준비기간 및 본 수사기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특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Ⅲ. 김병기의원안

1. 제안이유

1.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8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6.
3. 회부연월일 : 2025. 12. 29.

2.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정교유착을 방지하여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함)과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 의혹, 국가 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 내부 선거 및 공직선거 과정에 대한 개입 가능성 등은 단순한 개별 위법행위를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함.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불법적 유착을 차단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공적 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함(안 제2조).

나.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3조).

다. 정당의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최근 대통령비서실·검사 직에 있었던 자, 통일교 또는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등을 특별검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안 제4조).

- 라. 특별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수사기록·증거 제출 및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 또는 법원 영장에 따라 열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마. 특별검사에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사 내용의 무단 공표나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 보고를 금지함으로써 외부 개입과 수사 왜곡 가능성을 차단함(안 제8조).
- 사. 수사 준비기간을 두어 조직과 인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본 수사기간을 정한 뒤 필요 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수사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조화롭게 함. 수사 종료 후에는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9조).
- 아.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기간을 설정하고, 공개 재판 및 중계 허용, 속기·녹음·영상 기록을 의무화하여 사법 절차 전반의 신속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0조).
- 자.公所 제기 여부, 판결 확정 등 주요 단계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 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차. 자수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3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 세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통일교가 정치권과 유착하여 금품 수수 등을 행한 사건 및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등에 대한 불법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게 함으로써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임.

이에 더하여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민중기 특검팀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하거나 사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김병기의원안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사건 및 공적개발원조,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2. 특별검사제도의 연혁

- 1999년 9월 30일 법률 제6031호로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과업유도 및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 임명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2025년 8월 현재까지 총 16건의 개별적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이하 “개별특검법”)이 제정·시행 되었음.¹⁾
- 2014년에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근거²⁾를 마련하였음. 2026년 1월 현재까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된 사례는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2021. 4.)와 안권섭 ‘관봉 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광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 검사(2025. 11.)등 총 2차례가 있으며,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에도 개 별특검법이 6차례³⁾ 제정·시행된 바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 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

1) 각 개별특검법의 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참조

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 2014. 6. 19. 시행)

3)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11.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8.5. 시행),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4. 시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6.시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6.시행),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6.시행)

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은 특검 수사기간 중 각각 1차례 개정된 바 있음.

- 상설특검법 및 개별특검법은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사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 등을 대상⁴⁾으로 함.

3. 제정안의 주요내용

- 세 건의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통일교가 정치권과 유착하여 금품 수수 등을 행한 사건 및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및 공직선거에 대한 불법개입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적으로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민중기 특검팀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하거나 사

4)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과 ②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서, 국회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통일교 관련 단체·인사가 제20대·제21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 간 회동을 요청·주선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 사건, 수사·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직무 유기·직권 남용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증거 인멸·교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김병기의원안은 신천지와 통일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사건 및 공적개발원조,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임.

- 제정안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법률에 정해진 기관의 장 또는 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단체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며,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가 6명(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또는 8명(송언석·천하람의원안)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3명(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또는 4명(송언석·천하람의원안)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함.

또한,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을 60명(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또는 80명(송언석·천하람의원안)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 30명(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또는 40명(송언석·천하람의원안) 및 파견검사를 제외한 60명(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또는 100명(송언석·천하람의원안) 이내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수사기간은 준비기간(20일 이내)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또는 2회(송언석·천하람의원안)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은 위와 같은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설특검법과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 상설특검법과 세 건의 제정안 비교

구 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수사 대상	① 국회 본회의 의결 사건 ②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①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정치권 인사에게 정치자금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약속·알선 하거나 이를 수수·요구·청탁 등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② ①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등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 등이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하거나 사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③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 지시·권유·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관리·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 사건 ④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제20대·제21대 대선 전후 대통령 후보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요청·주선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사건 ⑤ ①-④까지 사건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	①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거나 공직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받은 사건 ②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①의 정치자금, 뇌물 등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받은 사건 ③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등 범죄사건 ④ ①-③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① 통일교와 관련 단체·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②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 사건 ③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④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 ⑤ ①-④까지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⑥ ①-⑤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구 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하거나 비호, 각 사건 관련 증거 인멸·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⑥ ①-⑤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특별검사 임명 절차		① (지체 없이) 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의뢰 ② (5일 이내)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특별검사후보자 2인 추천 ③ (3일 이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 부의장이 요청 ② 대통령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법원행정처장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⑤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의뢰 - 다만,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은 제외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⑤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⑤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자격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변호사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재직연수 합산) 있었던 사람		

구 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결격사유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6. 공무원임용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 4.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5. 공무원임용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다만 상설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은 제외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당적을 이탈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6. 공무원임용결격자	1. 국민이 아닌 자 2.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 5. 통일교 또는 신천지의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6. 공직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7. 공무원임용결격자
	특별검사보	①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명요청(후보자 4인) ③ 대통령의 2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명요청(후보자 8인) ③ 대통령의 4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명요청(후보자 6인) ③ 대통령의 3인 임명	①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② 특별검사의 임명요청(후보자 6인) ③ 대통령의 3인 임명
	특별수사관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6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60인 이내 임명
	수사협조 및 지원	① 수사협조요청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및 이 법 시행당시 재판 진행 중인 공소유지 사건 인계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③ 인력지원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③ 인력지원요청권

구 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 시 징계 요청권. 다만,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10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6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60인 이내 (불응 시 징계요청권)
수사 기간	① 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명시) ② 원칙: 60일 ③ 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① 준비기간: 20일(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 공소유지 가능 명시)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④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	① 준비기간: 20일(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 공소유지 가능 명시)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④ 재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① 준비기간: 20일(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받은 사건 공소유지 가능 명시) ② 원칙: 90일 ③ 연장: 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④ 재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재판 기간	①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② 2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③ 3심: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통지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 국회에 서면 보고 *사건의 대국민 보고 가능		

4.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1조 및 제2조)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통일교(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가 정치권 인사(그 소속 공직자·당직자·선거캠프 관계자 및 사실상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정치자금·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향응·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약속·알선 등을 하거나 이를 수수·요구·청탁 등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제1호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감찰·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 또는 그 소속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공직자 등이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하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 소속 간부 등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제공하거나(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정한 청탁 등을 한 사건 2.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제1호의 정치자금, 뇌물 등을 제공받거나(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정한 청탁 등을 받은 사건 3.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등 범죄사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

거나 사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3.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지시·권유·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관리·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 사건 4.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가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 간 회동이 있었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주선하였다는 의혹 사건 및 그 과정에서 정책·수사·감찰·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감찰·조사	건	
---	----------	--

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
--	---	---

	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범죄	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	---	---

-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2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인사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정치자금 등 불법 제공·수수 등 의혹 사건, 민중기 특검팀 또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 등의 해당 수사 은폐·사건 왜곡 등 의혹 사건, 교단 조직 등을 동원해 교인·관계자를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 행사 의혹 사건, 제20대·제21대 대선 전후 대통령 후보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해 통일교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 간 회동 과정에서 부정청탁·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 의혹 사건, 위 각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인멸, 방해 등을 한 의혹 사건, 위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규정함.

서왕진의원안 제2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통일교 관계자의 정치인·공직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등 사건,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공직선거 불법개입 등 범죄사건, 위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규정함.

김병기의원안 제2조제1항은 통일교와 그 관련 단체·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 금품·향응 등 제공·부정청탁 의혹 사건, 공적개발원조·한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위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규정함.

[표 2] 세 건의 제정안의 수사대상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①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정치권 인사에게 정치자금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약속·알선 하거나 이를 수수·요구·청탁 등을 하였다는 의혹사건 ② ①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 등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 또는	①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을 제공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받은 사건 ②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이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①의 정치자금, 뇌물 등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받은 사건	① 통일교와 관련 단체·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 등이 수사를 은폐·무마·회유·지연 하거나 사건을 왜곡·조작하였다는 의혹 사건 ③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 지시·권유·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관리·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④ 통일교 또는 관련 단체·인사가 제20대·제21대 대선 전후 대통령 후보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요청·주선하였다는 의혹 사건 및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혹 사건 ⑤ ①-④까지 사건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 관련 증거 인멸·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⑥ ①-⑤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③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개입 등 범죄사건 ④ ①-③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②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련 의혹 사건 ③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④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 ⑤ ①-④까지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 ⑥ ①-⑤까지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송언석·천하람의원안 및 서왕진의원안 제2조제2항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하여금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서왕진의원안 제2조제3항 및 김병기의원안 제2조제2항은 인지된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범인은닉죄 등, 영장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수뢰 등의 죄,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관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왕진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⁵⁾.

[표 3] 세 건의 제정안 인지된 관련 사건 정의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미규정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범죄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김병기의원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대상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기존 개별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례를 살펴보면, ㉠ 특정한 의혹 사건으로 한정된 사례,⁶⁾ ㉡ 특정한 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사례,⁷⁾ ㉢ 특정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규정한 사례,⁸⁾ ㉣ 특정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을 모두 규정하면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사례⁹⁾가 있음.

○ 송언석·천하람의원안 및 김병기의원안 제2조제1항제6호, 서왕진의원

- 6)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 7)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한다.
1.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외압의혹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편법 및 외압의혹,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이와 관련된 의혹사건
 2. 제1호의 참여과정에서 전대월 하이엔드 그룹 대표·권광진 쿼에너지대표·허문석 코리아크루 드오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사건
- 8)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전 남한건설 대표이사 정용재가 부산지방검찰청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시사인(2007년 8월 29일 등록 서울 다 07800)과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2.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이 2010년 6월 8일 방영한 것에서 출연한 인물들이 진술한 것과 관련한 전직·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의혹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법 시행 전에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하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¹⁰⁾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특정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제도를 통하여 수사를 할지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고, 특별검사를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인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것인지 역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10)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2008. 1. 10.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특별검사제도의 장단점, 당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특별검사가 법률전문가인 점,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7호가 ‘제1호 내지 제6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안 제3조~제5조)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이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법원행정처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이 개명·합당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정당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대

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를 합산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및 당적을 이탈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통일교 또는 신천지의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6.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	---

-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3조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에게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부의장이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기간 내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서면 의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의뢰를 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서왕진의원안 제3조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해당 단체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왕진의원안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조국혁신당한 곳인 것으로 파악됨¹¹⁾.

김병기의원안 제3조는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1)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전 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특검으로부터 기소되었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¹²⁾,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¹³⁾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각 단체가 대통령에게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됨.

한편, 세 건의 제정안은 상설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12) 「**한국법학교수회 정관**」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The Korea Law Professors Association, Inc. (KLPA):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고, 법학교육의 발전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회의 목적달성에 수반되는 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법학교육 발전방안의 연구 및 건의
3. 법학교육의 표준화 및 인증사업
4.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위한 방안의 제시
5. 학술연구논문집 및 회보 등의 발간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관**」 제1조(목적)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를 존중하여 입시, 교육, 법조인 배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대학원의 의견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하며, 긴밀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2. 법학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3.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4.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업
5.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

[표 4] 세 건의 제정안 특별검사 임명절차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의원안	김병기의의원안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 다만, 국회의장이 기간 내에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부의장 중 국회의장이 과거에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 부의장이 요청 ② 대통령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법원행정처장은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대통령의 임명 (추천후보자 중 1인) - 3일 이내 ⑤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 의뢰 - 다만, 법 시행 당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소속되거나 범죄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은 제외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및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좌동 ⑤ 좌동	① 국회의장의 임명요청 -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 ②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③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 - 의뢰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④ 좌동 ⑤ 좌동

- 세 건의 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이거나, 정당의 당적을 가졌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로 등록한 사람 등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음.

다만, 서왕진의의원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도 제정안의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제4조제3호는 송언석·천하람의원안과 달리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왕진의원안 제4조제4호는 나머지 두 제정안과 달리 당적을 이탈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병기의원안 제4조제5호는 나머지 두 제정안과 달리 통일교 또는 신천지의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도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특검법(총 16건)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장(4건) 또는 대한변호사협회(5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섭단체가 법원행정처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고¹⁴⁾,

그 밖에 2012년 9월 특검법¹⁵⁾에서는 민주통합당이, 2016년 11월 특

14)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 4. 26.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 및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를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5)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민주통합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

검법¹⁶⁾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하도록 했으며, 2018년 5월 특검법¹⁷⁾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2025년 6월 3건의 특검법¹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
 마 있음.

- 한편, 안 제3조제3항에서 특별검사후보자의 자격으로 「법원조직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¹⁹⁾에 15년 이상(각 호의 2개 이상의

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7)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18) 「**김진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19)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 합산)'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임.

참고로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상설특검법²⁰⁾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으로 규정하고, 개별특검법에서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7건),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5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1건²¹⁾),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하였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3건²²⁾)이라고 규정한 사례가 있음.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2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2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2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행정처는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와 그 직원을 감독하고,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을 구성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입법·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²³⁾

23) 법원행정처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결정) 사건에서 재판관 2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회신함.

**다. 특별검사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안 제6조~제8조)**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⑤ 특별검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징계절차 개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

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특별수사관 및	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	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및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
--	--	--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력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그리고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 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	--

- 제정안의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역할을 살펴보면, 특별검사는 안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안 제6조제1항제1호),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하며(안 제6조제1항제2호),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

독에 따라 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하며,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특히, 서왕진의원안 및 김병기의원안은 송언석·천하람의원안과 달리 수사협조요청권(안 제6조제3항)과 인력지원요청권(안 제6조제5항)에 더하여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열람 또는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권(안 제6조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두 제정안 제6조제4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표 5] 세 건의 제정안 특별검사 직무범위와 권한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및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진행 중인 공소유지 사건 연계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① 수사협조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인력지원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③ 인력지원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② 대통령 기록물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권(불응 시 징계요청권) ③ 인력지원요청권 (불응 시 징계요청권)

- 한편, 안 제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송언석·천하람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서왕진의원안은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라는 단서도 규정되어 있고,

안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송언석·천하람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수사협조 요청권만 규정되어 있는데, 서왕진의원안은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다른 특검 또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을 인계받아 제정안에 따른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서왕진의원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를 살펴보면,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특별검사가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그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하는데 반해, 서왕진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6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제1항).

참고로, 상설특검법은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안 제7조제3항), 대검찰청·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최대 4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10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제4항)²⁵⁾.

서왕진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안 제7조제3항), 대검찰청·공수처·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최대 30명의 파견검사와 최대 60명의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제5항)²⁶⁾.

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25)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215억 7,2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제13조(보수 등)	인건비	5760	1952	7,712
	운영비	7658	1122	8,780
	시설비	1071	-	1,071
	사무실 임차	3224	785	4,009
	합계	17,713	3,859	21,572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에 따른 조직 규모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파견검사 5명 이내, 파견 공무원 30명 이내)²⁷⁾보다 큰 것으로 보이나 3대 특검법에 따른 조직규모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표 6] 제정안의 조직규모 비교

구분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의원안, 김병기의의원안
특별검사보후보자	8명	6명
특별검사보	4명	3명
특별수사관	80명	60명
파견검사	40명	30명
파견공무원(파견검사제외)	100명	60명

26)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두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총 156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인건비	4,334	1,461	5,795
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운영비	5,416	929	6,345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시설비	767	—	767
안 제9조(수사기간 등),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안	사무실 임차	2,226	555	2,781
제13조(보수 등)	합계	12,743	2,945	15,688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6년과 2027년으로 하고, 수사기간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력 규모를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인원으로, 공소유지기간 인력규모는 수사기간의 2분의 1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인력의 규모와 구성비 등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2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관기관 근무 경력,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6조제5항 및 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제6조제6항은 특별검사의 협조요청에 대해 관계기관의 장이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설특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 징계절차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

- 한편, 세 건의 제정안 제8조제1항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²⁹⁾ 심사과정에서 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수정 의결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

2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특정 검사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관계 기관의 장이 제5항 본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³⁰⁾.

또한, 서왕진의원안 및 김병기의원안 제8조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5년 6월 제정된 3개 특검법³¹⁾의 경우도 제정안과 같이 수사내용 공표·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반면,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8조제2항은 구체적인 법률 조문 열거 없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세 건의 제정안 제8조제4항은 상설특검법³²⁾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30) 제415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6. 17.) 회의록 참조(p.13~14)

3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5. 6. 10. 제정) 제9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후술하는 안 제15조(해임 등)참고).

- 그 밖에 세 건의 제정안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도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개별특검법 16건 중 9건은 공소유지단계에서는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³³⁾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3)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상설특검법 제정 이후 제정된 개별특검법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상 7건의 개별특검법에서만 별도의 단서 규정 없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안 제9조~제12조)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

④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이 법의 회계 보고 규정을 준용하되, 보고 기간의 기산일은 사건 인계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	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특별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 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	--	--

의 처리 보고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건 처리 보고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의 경우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의 경우에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 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 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 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④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
--	--	--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신고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법정 내 재판참여자들의 신변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조치를 의미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중계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	---	--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제외한 수사 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	---

- 안 제9조의 수사기간 등과 관련하여, 세 건의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준비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9조제3항은 특별검사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2회에 한해 각 30일 연장하는 방식으로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서왕진의원안 및 김병기의의원안 제9조제3항은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연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여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수사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안 제9조제5항 후단)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세 건의 제정안의 총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

일 이내, 연장 60일로 최대 총 170일임.

[표 7] 세 건의 제정안 수사기간 및 미완료시 절차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의원안·김병기의의원안
① 준비기간: 20일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가능 및 인계 받은 사건 공소유지 가능 명시)	① 좌동
② 원칙: 90일	② 좌동
③ 연장: 30+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③ 연장: 30일(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
④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	④ 재연장: 30일(대통령 승인사항)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상설특검법과 같이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서왕진의의원안 및 김병기의의원안은 3대 특검법과 같이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며,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 안 제10조의 재판기간 등과 관련하여, **세 건의 제정안은** 상설특검법³⁴⁾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은 제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 대해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안 제10조제1항),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항소·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³⁵⁾ 등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제2항).

세 건의 제정안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3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5) 「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률」 및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단서³⁶⁾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사생활·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관계 공무원의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그 밖에 세 건의 제정안 제12조에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송언석·천하람의원안과 관련하여,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36)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경우에도 안 제9조제4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는 규정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세 건의 제정안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³⁷⁾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 건의 제정안 제10조제5항과 관련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 초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예규 규정과 같이 일정한 예외를 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7)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 등(안 제13조~제17조)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 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사 기간 산정에 있어 전임 특별검사와 후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은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이 법의 사건 처리 보고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	--	--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해임된 경우,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	---

③ 제2항에 따른 탄핵심판 계속기간(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결정 선고일까지의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수사기간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 중인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소 제기일까지의 비용 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	---

-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며(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 특별검사를 해임하되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또한 제정안들은 안 제15조제1항제3호의 해임사유로서 상설특검법³⁸⁾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검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서왕진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상설특검법과 같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탄핵심판 계속기간은 안 제9조에 따른 수사기간 등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표 8] 세 건의 제정안 신분보장 규정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① 특검·특검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② 특검·특검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 ③ 탄핵심판 계속기간은 수사기간에 미산입	① 좌동

38)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바. 재판권,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안 제18조~제24조, 부칙)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판관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그 내용을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

부하여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 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	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	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
--	---	---

한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같은 법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다른	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때에는,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	--	--

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그 효력을 가진다.	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18조는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³⁹⁾, 서왕진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제1심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고, 김건희특검법 및 내란·외환특검

39)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끼리는 한 법원이 병합 관할할 수 있으며, 특별히 이송하거나 심리 병합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

법40)은 서왕진의원안 및 김병기의원안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표 9] 세 건의 제정안 재판관할 규정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김병기의원안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관할은 「형사소송법」 준용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 준용

- 세 건의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제1항).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외에 별도로 공소제기가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⁴¹⁾
- 송언석·천하람의원안 및 서왕진의원안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와의 관계를 안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은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

4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4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과 인력을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은 제정안에 규정된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더해 두 제정안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10] 세 건의 제정안 다른 특검과의 관계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①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상 특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에게 해당 사건과 인력 인계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퇴직한 것으로 봄 ②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보,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미산입 -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인력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이 법의 범죄 수사대상이 상설특검법상 특검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상호 간 협의로 관할 설정 가능	미규정

- 세 건의 제정안은 벌칙을 규정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 또는 자격정지, 벌금형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송언석·천하람의원안 제22조, 서왕진의원안 제22조, 김병기의원안 제23조).

참고로 상설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등, 파견공무원,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징역 또는 자격정지만 규정하고 있음⁴²⁾.

- 한편, 서왕진의원안 및 김병기의원안은 형벌 등의 감면을 각각 안 제24조와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음.

두 건의 제정안은 이 법의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서왕진의원안 제24조, 김병기의원안 제23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

4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생략)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수사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 법률」이 2025년 9월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을 제정안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한 것임.

다만, 김병기의원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같이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및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서왕진의원안은 필요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11] 세 건의 제정안 형의 감면 규정 비교

송언석·천하람의원안	서왕진의원안	김병기의원안
미규정	다음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③ 수사·재판절차에서 주요 진술·증언·자료제출·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다만 ①, ③은 필요적 감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 안 부칙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송언석·천하람의원안은 이 법의 효력을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서왕진의원안과 김병기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함에 따라 이뤄지는 사건의 처리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세 건의 제정안 부칙 제4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른바 3대 특검법에서도 동일한 부칙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

김병기의원안 부칙 제5조는 두 제정안과 달리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이는 이른바 3대 특검법이 2025년 9월 개정될 당시 신설된 형의 감면 규정에 대한 부칙 규정을 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원행정처는 김병기의원안 제23조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특수성, 사안의 개별적·구체적 특성, 행위에 따른 책임에 비례하는 합리적 양형을 통한 형벌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보다는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

※ 참고자료

1. 개별사건에 관한 특별검사법 제정·시행 연혁

법 률 명	본회의 의결일	공포일·시행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5.6.5.	2025.6.10.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22.4.15.	2022.4.2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8.5.21.	2018.5.2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6.11.17	2016.11.22.
이명박 정부의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9.3.	2012.9.21.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2.2.9.	2012.2.22.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10.6.29.	2010.7.1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2.17.	2007.12.28.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11.23.	2007.12.10.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관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5.6.30.	2005.7.21.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3.11.10.	2003.12.6.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2003.2.26.	2003.3.15.
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001.11.22.	2001.11.26.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1999.9.20.	1999.9.30.

* 역대 특별검사법의 주요 내용 비교는 [참고자료2] 참조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은 2021. 4. 2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및 2025. 11. 17. 관봉권 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한 경우 등 총 2건이 있음.

2.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에너지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임 명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3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①국회의장의 임명요청 -법시행일 부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 -2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없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3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②대통령의 특검후보자 추천의뢰 -2일 이내 (미의뢰 시 국회의장이 의뢰)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좌동)	(좌동)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한변협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7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대법원장 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민주통합당 의 특검후 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특검 후보 추천 위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더불어민주 당·국민의 당의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정의 의 의원모 의 의원모 일이 대한 변협 추천 4인 중 특 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교섭 단체 합의로 법 원 행정 처 장 및 대 한변협 회 장이 각각 2인씩 추천 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설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 설단체가 특검후보자 2인 추천 -3일 이내	③ 더불어민 주당 및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설단 체가 특검 후보자 2인 추천 -5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④대통령의 임명 -3일 이내 (임명하지 않 을 경우 연장 자 임명)

구분	조폐공사·산업 및 오피스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촉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일반	자격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10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판사 검사 법조경력 변호사 또는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15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	①15년 이상 법 조 경 력 판사·검사· 변호사 ②15년 이상 변호사 자 격 보유하고 공공기 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 종사 또는 대학 의 법률학 조교수 이 상 재직	(좌동)	(좌동)
	결격사유	①공무원 ②법 시행 전 1년6월 이 내에 공무원 이었던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진적 있는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④공무원 결격자	(좌동)	(좌동)	①공무원 ②시행일 1년 이내 공무원 이었던 자 ③정당 당적 가진자, 가 졌던 자 ④공무원 결격자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특검임 명전 1년 이내에 당적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대통령 비 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직에 있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좌동)	①국민이 아닌 자 ②공무원 ③특검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 이 었던 자 ④정당 당적 가진자 또는 가졌던 자 ⑤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한 사람 ⑥공무원 결격자
	특별 검사보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10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좌동)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①7년 이상 법 조 경 력 변호사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②특별검사의 2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1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4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 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10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5인 임명 (판·검 사 비경력자 2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6인 임명 요청 ③대통령의 3인 임명 (판·검 사 비경력자 1인 이상)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③대통령의 2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6인) ③대통령의 3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4인 이내) ③대통령의 4인 이내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12 인) ③대통령의 6인 임명	②특별검사의 임명요청 (후보자 8인) ③대통령의 4인 임명	
특별 수사관	특별검사가 사건당 12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6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사건당 16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2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좌동)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35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10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80인 이내 임명	특별검사가 50인 이내 임명	
권한	① 수사협조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인 이내, 파견공무원 10인 이내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2회 이상 불 응시)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1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좌동)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③참고인 동행명령권 (위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5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좌동)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5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단, 파견요청 전 관계기관장과 협의 의무)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3인 이내, 파견공무원 35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10인 이내, 파견공무원 3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명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③ 미이첩된 사건에 대 하여 공소 수행 검사 군검사 지 휘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70인 이내, 파견공무원 14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명 이상을 공수 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6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 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① 수사협조 요청권 (불응시 징계 요청권) ② 인력지원 요청권 - 파견검사 30인 이내, 파견공무원 60인 이내 (불응시 징계 요청권, 파견 공무원 10분 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 받도록 명시]
수사 기간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①준비기간: 7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1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20일 (수사금지)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60일	①준비기간: 20일 ②원칙: 70일	①준비기간: 20일 (공소 유지)	(좌동)	①준비기간: 20일 (수사 진행)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②원칙: 3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60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승인) (최장 105일)	②원칙: 70일 ③연장: 30+2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 보고) (최장 110일)	③연장: 30+15일 (대통령 보고) (최장 125일)	②원칙: 30일 ③연장: 10일 (대통령승인) (최장 40일)	②원칙: 35일 ③연장: 20일 (대통령승인) (최장 55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②원칙: 30일 ③연장: 15일 (대통령승인) (최장 45일)	②원칙: 6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9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10일)	③연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20일)	기능 명시) ②원칙: 90일 ③ 연 장 : 30+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20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기능 명시) ②원칙: 60일 ③ 연 장 : 30+30일 (대통령, 국회 보고) ④재판장 30일 (대통령승인) (최장 170일) ⑤ 수사기간 이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여부 미결정된 경우 국수본부장에게 인계
재판 기간	①1심: 3월 ②2심: 2월 ③3심: 2월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①1심: 3개월 ②2심: 2개월 ③3심: 2개월	(좌동)	①1심: 6개월 ②2심: 3개월 ③3심: 3개월	(좌동)	(좌동)	(좌동)
사건 처리 보고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 확정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좌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좌동)	(좌동) 중간수사발표 규정없음	(좌동)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 가능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확정 시 10일 이내에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언론브리핑 가능 (피의자·실외 수사과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재판 관할	서울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형사소송법」 상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좌동)	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전속 관할 ※ 민간법원 재판권 규정
벌칙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①직무수행방해: 5년이하 징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구분	조폐공사사업 및 오토비특검법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측근비리 특검법	사할린유전 특검법	삼성비자금 특검법	BBK 특검법	검사등 불법자금 특검법	D-DOS 특검법	내국동 사저부지 특검법	상설특검법	최순실등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이여람 중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위헌)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②공무상비밀누설 3년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또는 5년이하 자격정지	③수사내용 공표누설: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④동행명령 거부: 1천만원이하 벌금											④ 직무수행 중 지 득 정 보 소속기관 보고 3년이하 징역, 5년이하 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수사최장기간: 200일

※ 특검 최대 규모: 총인원(317인), 특검(1인), 특검보(6인), 파견검사(70인), 파견공무원(140인), 특별수사관(100인)